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10
----------	------

제출년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 기능의 약화 등이 초래하는 빈곤 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위스타트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5조).
- 다. 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0조).

제정 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5. 11. 1. - 2005. 11. 21.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정, 지역사회 및 시가 협력하여야 한다.
③위스타트 시행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스타트” 라 함은 영문 웰페어 에듀케이션 스타트(Welfare Education Start)의 줄임말로서 아동에게 건강, 복지, 교육영역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처한 경제적 상태와 상관없이 동등한 출발을 보장하고자 하는 시와 지역사회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산시위스타트마을” (이하 “위스타트마을”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위스타트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복지지원”이라 함은 위스타트마을 육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말한다.
4.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다.

제4조(사업) ①위스타트마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스타트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스타트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6.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 보육,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장이 위스타트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사업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이 우선 참여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위스타트 마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위스타트마을의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2.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
3. 복지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위스타트마을 조성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5.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 평가
6. 그 밖의 위스타트마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함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되며, 안산교육청 초등교육관련국장, 위스타트마을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민간단체의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 부진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마을별 운영위원회 구성) 위스타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별 위스타트마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안산시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가족여성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담당·팀장 직위·성명	We Start 담당 이혜숙
	담당자 성명·전화	이혜숙 (행정 2201)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10
----------	------

제안년월일 : 2005. 12. 6.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 이유

- 조례 제명에 따라 일부조문 중 부적합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제1조 중 “육성”을 “운영”으로 수정함.(안 제1조)
- 제3조제3호 중 “육성”을 “운영”으로 수정함.(안 제3조)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육성”을 “운영”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육성”을 “운영”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u>육성</u>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운영</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 2. (생략)3. “복지자원”이라 함은 위스타트마을 <u>육성</u>을 위하여 제공되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말한다.4. (생략)	<p>제3조(정의)</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 2. (원안과 같음)3..... <u>운영</u>.....4. (원안과 같음)